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 36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 의 자: 김세윤 의원
3.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및 의회의 동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민간위탁 및 변경협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8조)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3조)

○ 수탁사무의 처리 및 위탁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23조)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6. 조례안예고기간: 2026. 11. 10. ~ 2026. 11. 14.(5일간).

7.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1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8,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전화: 061-550-5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변경협약”이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중 위탁사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려는 때에도 계약만료 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제4항제1호와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의회에 사전 설명 또는 협의하여 군의회가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과 변경협약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주소,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예산의 의결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수탁기관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지역 간 균형있는 분포 등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완도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하되,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이의신청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확인을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완도군청 소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수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민간위탁 사무(이하 “수탁사무”라 한다)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사항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에 대한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

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첨부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수탁기관이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재산을 훼손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에게 징수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그 징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입금을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방법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모든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2. 휴게시설 및 복지제도 운영실적

3. 운영비용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 불편

5. 그 밖에 군수가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은 해당 협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참고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